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경영주 등록의 법적 근거 마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1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인 배우자에 대한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업인인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농어의 종사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 ----- ----- ----- ----- -. ----- ----- -----.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1. -----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 및 제40조----- ----- ----- ----- ----- ----- -----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	2. -----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어의 어업종사자 및 제27조에-- -----

현행	개정안
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u><신 설></u>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등록과 변경 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농어업경영에 관련된 정보와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제도를 두고 있음.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주체인 농어업경영체는 동법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으로 구분되며,¹⁾ 이 중 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 다시 ‘농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분됨.²⁾

참고로 해당 법률의 하위 법령에서는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①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①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②배우자 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③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음.³⁾

이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에서 농업인을 경영주와 종사자로 구분함에 따라 현행법령⁴⁾에서는 농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①경영주인 농업인과 ②경영주의 농업인 중 하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4)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인 기준)

농어업경영체법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경영하는 자>

경영주

*경작면적(1천㎡), 연간판매액(120만원)

경영주

*경작면적(1천㎡), 연간판매액(120만원)

<종사하는 자>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 종사일수(연간 90일 이상),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
충족

경영주의 농업인

*배우자에 한해 공동경영주 희망 등록 가능

‘배우자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종사일수(연간 90일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경영주의 농업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종사일수(연간 90일 이상)

경영주의 농업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서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경영주의 농업인’이면서도 추가적으로 ‘공동경영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동경영주 등록의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
접수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90일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농업인 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농업종사형태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신규등록사유	[] 분리 [] 귀농 [] 상속 [] 기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농업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실제 농어업 경영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온 여성농어업인의 제도적 지위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동경영주 등록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참고로, 2025년 농업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 농업인 116만명 중 경영주의 농업인은 약 59만명이며, 그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8만명으로 나타남.

[2025년 농업인 현황]

구분	농업인(명)	경영주(명)	경영주의 농업인(명)	공동경영주(명)
합계	2,530,505	1,819,484	711,021	329,289
남성	1,369,798	1,250,996	118,802	48,250
여성	1,160,707	568,488	592,219	281,039
여성비율(%)	45.9	31.2	83.3	8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

다만, 개정안 제4조제2항은 농어업인인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영주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부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도 배우자인 농업종사자는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음.

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공동경영주임을 등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종사자 본인이 등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414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